

규제심사대상 확인

접수번호 : 제 2022-4807호

제 목 : 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적성에대한정밀검사관리규
정일부개정

위의 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적성에대한정밀검사관리규정
일부개정을(를)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
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.

2022. 11. 11.

※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·개정안에 대한 것으로, 이후 입법과정에서
내용이 변경되는 경우,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
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

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

